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63호
- 나.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발의일자 : 2023년 05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2차지방일괄이양 등에 따라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 위임 규정 삭제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치구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위임조항과 사무명에 반영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관 부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됨.

##### 나. 자치구 위임사무 삭제

- 정부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13개 부처, 261개 사무를 담고 있는 36개 법률(6개 개별법안, 6개 일괄법안)을 2022년 1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본격 추진함.
-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22.6.10.)되면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폐업 등의 신고수리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법 제6조 등) 마약류 관리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함.
-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15.5.18.)되면서 보고 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마약류의 도·소매 판매 보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사무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함.

- 다만, 2015년 법 개정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에서 제외된 사무를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은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님.
- 현재 마약류에 대한 서울시장의 권한은 출입·검사와 수거(법 제41조), 업무보고 명령(법 제43조), 마약류 취급자 교육(법 제50조 등),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69조)만 남게 되지만,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므로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없음.

### <삭제 (하위)사무명 >

사 무 명	개정사유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제2차지방일괄이양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개정 (개정일: '22.6.10.) (시행일: '23.6.11.)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개정 ('15.5.18.)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다. 위임조항 및 사무명 변경

### (1) 위임조항 변경

-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임조항과 사무명을 변경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함.
  -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의 사무와 자동차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허가 취소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무는 관계 법령과 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3급이상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5급이하 연구관·지도관 등의 기관 내 전보 등의 임용권 위임 근거 규정을 반영함.
- 다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은 개정 이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해 불필요한 입법 공백과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게 됐으므로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개정사항이 신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위임조항 변경>

주관 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개정 사유
		현행	개정	
버스 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08.11.6 / ’11.4.11.)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	
택시 정책과	<2번 사무의 ‘사’목>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 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개정 (’21.11.16.)
인사과	<3~4번 사무>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이하 일반직 (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 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 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 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 정」 제26조의2· 제27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의 임용등에 관 한 규정」 제26 조의2	지방연구 직 및 지 도직 공무 원 임용 규정 개정 (’20.9.22.)
물재생 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30조	하수도법 제26조	하수도법 개정 (’22.1.5.)
소방 재난본 부 (예방 과)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소방시설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 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시설 법 개정 (’21.12.28.)

## (2) 사무명 변경

- 「하수도법」, 「아동복지법」, 「의료법」의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종전 「의료법」에서는 요양병원에 ‘정신병원’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각각 구분해 정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임사무의 내용은 동일함.

### <사무명 변경>

주관 부서	사 무 명		개정 사유
	현행	개정	
물재생 시설과	1. <u>허가의 취소 등</u>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 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1. <u>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u>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 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개정 (’22.1.5.)
아동 담당관	1. <u>요보호아동</u> 보호조치	1. <u>보호대상아동</u> 의 보호조치	0동복지법 개정 (’11.8.4.)
보건 의료 정책과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 및 <u>요양병원</u> (이하 " 병원 등")의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 <u>요양병원</u> 또는 <u>정신병원</u> (이하 "병원 등")의 개설허가	의료법 개정 (’20.3.4.)

## 라. 주관부서 변경

-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창의행정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이

‘창의행정담당관’ 으로 개편(2023. 1. 9)되면서 서울시립대의 교수, 부 교수, 조교수의 임용업무의 주관부서가 변경됨.

-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 내 ‘수질관리팀’ 을 ‘물재생시설과’ 로 이관하면서 수질보전과 광역 상수원 관리 등 관련 조항의 주관부서도 변경됨(2023. 3. 10).
- 2015년 민선6기 2차 조직개편 시 ‘체육정책과’ 는 체육정책기능, ‘체육진흥과’ 는 여가정책으로 업무분장되면서, 체육시설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체육정책과로 이관됨.

### <주관부서 변경>

사무명	주관부서	
	현행	개정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시정연구담당관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기획조정실)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치수안전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체육진흥과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관광체육국)

- 그러나, 2015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 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소연	02-2180-8065